



일본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사례 분석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nell7508@suwon.re.kr

강태욱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tw.kang@suwon.re.kr

요약

■ 일본 수정법의 핵심은 규제가 아닌 정책지원을 통한 수도권 활성화

- 일본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30년 전 종료. 현재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발전 전략에 따라 효율적 도시 조성/배치에 집중
 - 도시 인프라의 집중과 억제 목적은 낮아졌으며 연구소, 문화시설, 경기장 등 인프라를 분산해 중심지 이외 주변 도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
-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점차 폐지(축소)하고 있으며 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기성시가지 외부의 메리트 제공 유지로 공장3법 완화에 대한 불만 없음
- 규제를 축소 혹은 폐지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며, 경제·산업분야 연합회 등에서 해당 규제의 불필요성 제기에 따라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재검토 요구 시 폐지

정책제언

■ 권역재지정 등 불필요한 규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춘 폐지 건의

-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고 계획 내 구역 재지정, 권역해제로 도시개발, 기업활동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상위법 수정 추진
 - 일본이 수정법의 가장 강한 규제인 공장3법을 폐지한 것처럼 과밀억제권역 종과세 폐지, 공장총량제 폐지 등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건의

■ 수도권정비위원회 참여를 통한 규제완화 필요성 전달

-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참여, 위원회에 건의, 국토부의 계획 수정 건의 추진, 수도권 규제의 불필요성 전달, 공감대 확대 추진
- 다양한 경제단체, 지자체, 위원회를 통한 정당성 건의

■ 규제가 아닌 지원차원으로 제도전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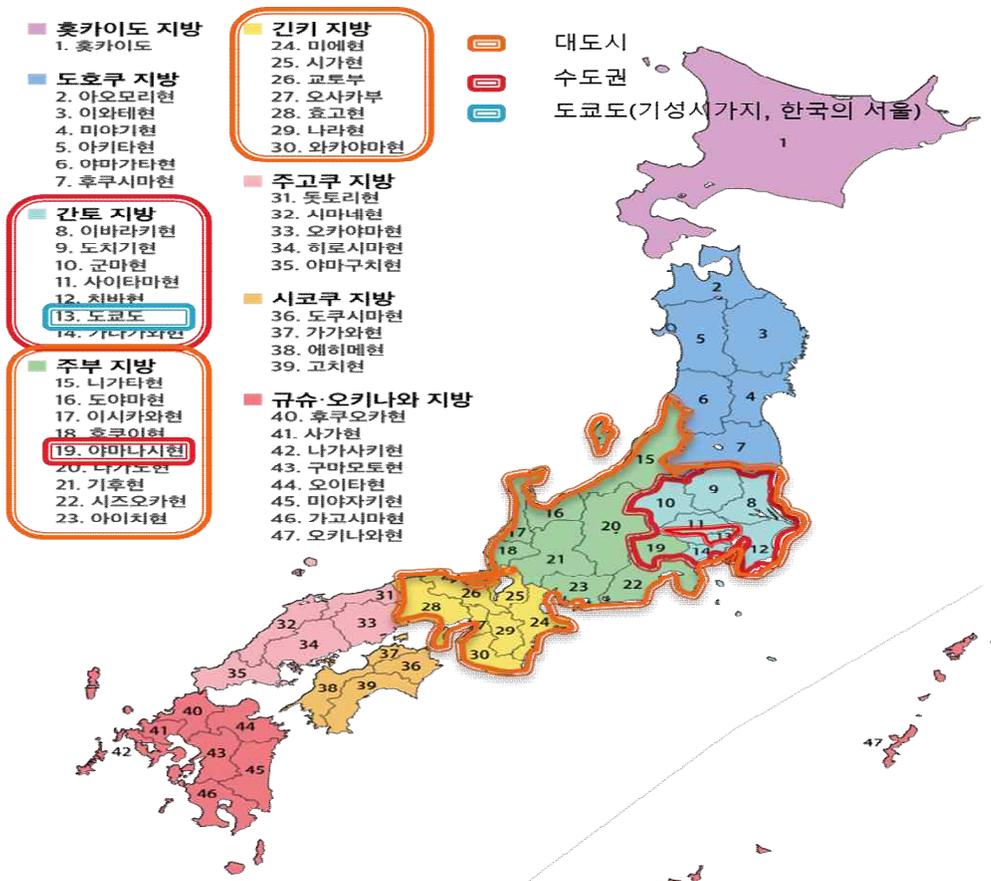
- 규제는 완화하되 비수도권지역 지원 강화로 제도 전환
- 이외 추가 데이터 확보(학생 수 변화 등) 등 개정 당위성 지속 제언

1 일본의 수도권 정비계획 개요

□ 일본 대도시와 수도권

- 일본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대도시권 정비계획(3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에서 수도권 정비계획 추진
 - 일본 대도시는 간토지방 중심의 수도권과 긴키권, 주부권 3개 지역으로 구성
-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인구 집중·과밀문제를 배경으로 중심부의 과도한 인구·산업 특히 공장의 집중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무질서한 시가지화의 억제나 권역 내에서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대도시권 정비법 제정
 - 정책 구역 제도와 3권 계획 및 그와 관련한 제도 창설
 - 동일한 틀의 정비계획을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이 하나의 축
 - 3권 계획 : 수도권정비법(1956년), 긴키권정비법(1963년), 중부권정비법(1966년)에 따른 정비 계획
 - 정책구역제도 : 대도시 지역을 기성시가지, 근교정비지대, 도시개발구역, 근교녹지보전구역으로 구분해 관리
- 수도권은 간토지방 6개 현과 도쿄도, 주부지방의 야마나시현 등 1도 7현 8개 지역이 해당
 - 도쿄도, 이바라키현, 도티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 수도권에는 정부 기관, 대기업 본사, 금융 기관 등이 위치하며 높은 인구 밀도와 전체 인구의 30% 가량 거주

< 일본의 대도시와 수도권 >



□ 일본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 1950년대 이후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인구 과밀화 문제 및 산업시설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도시권 정비를 위한 수도권 정비 계획 수립
 - 수도권정비법(1956년), 수도권공장등제한법(1959년)을 통해 기성시가지에 산업 및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내 산업 및 인구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
 - 이후 공장등제한법 개정(1972년)을 통해 기존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500m² 이상의 모든 공장에 대한 개설허가를 의무화하여 과밀공업지역(이전촉진지역)에서 공업집적도가 낮은 지역으로 신·증설을 촉진

□ 일본 수도권 정책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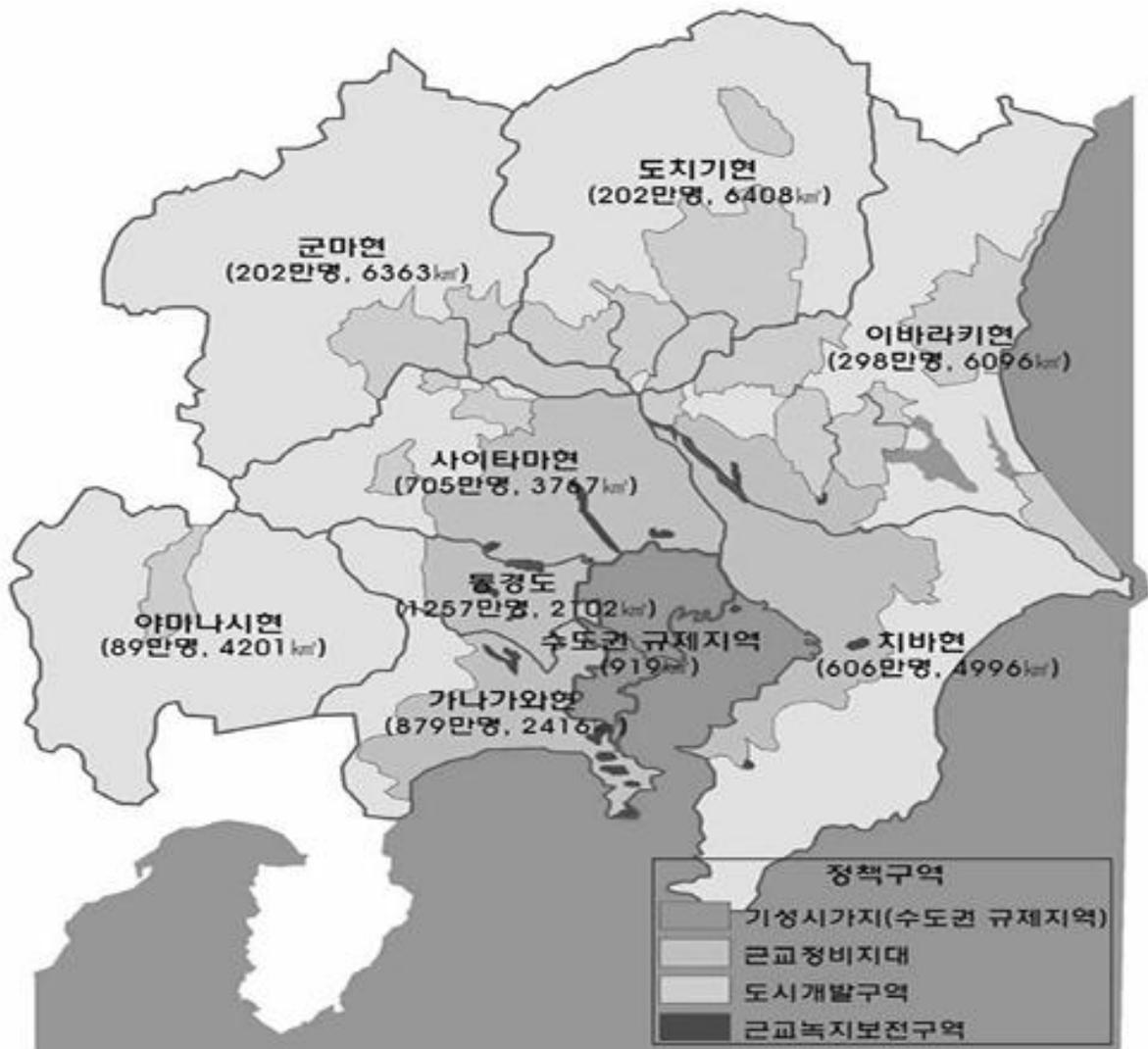
- 수도권의 일부지역을 기성시가지, 근교정비지대, 도시개발구역, 근교녹지보전구역으로 지정
- 면적 : 총 12,851km², 전국면적의 3.4%
- 기성시가지
 - 도쿄시 인접지역, 산업 및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시가지 구역
 - 도쿄도 특별구, 미타카시, 무사시노시, 가나가와현의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사이타마현의 가와구치시
 - 면적 : 959km²
- 근교정비지대
 - 기성시가지 등의 근교에서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정비 및 녹지 보전의 필요가 있는 구역
 - 도쿄도 하치오우지시, 사이타마현의 가와고에시, 치바현 치바시 등 162개 시정촌
 - 면적 : 6,374km²
- 도시개발구역
 - 기성시가지의 산업 및 인구의 집중을 완화해 지역내 산업 및 인구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 공업도시, 주택도시, 그 외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적당한 구역
 -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이바라키현 츠타우라시 등 94개 시정촌
 - 면적 : 5,518km²
- 근교녹지보전구역
 - 대도시부의 주변,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방지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녹지를 보전하는 구역
 -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도쿄도 아치오우지시, 히가시무라야마시 등 41개 시정촌
 - 면적 : 157km²

< 일본 수도권 정책구역 >

권역	면적(km ²)	해당 지역	비고
기성시가지	959	도쿄도(특별구, 미타카시, 무사시노시), 가나가와현(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사이타마현(가와구치시)	공장, 학교 입지 제한
근교정비지대	6,374	도쿄도 (하치오우지시), 사이타마현(가와고에시), 치바현(치바시) 등 162개 시정촌	계획적 시가지 정비, 녹지보전
도시개발구역	5,518	사이타마현(구마가야시), 이바라키현(츠치우라시) 등 94개 시정촌	공업도시 등으로 발전
근교녹지보전구역	154	가나가와현(요코스카시), 도쿄도(하치오우지시, 히가시무라야마시) 등 41개 시정촌	근교정비지역 내 녹지보전효과 높은 지역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2006), 전국경제인연합회(2015), 최근 일본의 수도권 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발췌

< 일본 수도권 정책구역 구분 >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2006), 전국경제인연합회(2015), 최근 일본의 수도권 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발췌

□ 일본 수도권정비계획의 특징

- ‘중앙 계획과의 일치성’ 전제 : 국토형성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을 포함한 3권 계획은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광역지방계획)과 조화 되어야 한다” 명시

< 일본 국토계획의 체계 >



2 일본 수도권 정비 제도 변화 추이

□ 일본 수도권 정비계획 변화 과정

- 195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산업의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지역불균형 문제로 수도권정비법, 수도권공장등제한법을 제정하였으나, 인구감소, 산업시설 기반 확대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법 폐지 필요성 대두

< 일본 공장 등 제한 제도 개요 >

기준	추진 전략
제한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정비법에 근거하여 기성 시가지에서 일부 구역(23구, 무사시노, 요코하마·가와사키·가와구치의 일부) 제한
기준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 작업장: 원칙 500㎡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교실 : 1,500㎡
허가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도부현 지사 및 정령 지정 도시의 시장(대학 및 바닥 면적 3,000㎡ 이상의 작업장은 국교 대신 동의를 필요)
공장 허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의 증대가 없고, 도시 환경을 배려한 것으로, 제한 구역 내의 이전, 근대화나 합병 등의 경영 합리화, 용기 포장의 리사이클 등에 관련된 신설 및 증설 공해 방지 등에 관련된 신설 및 증설 등

○ 2002년 이후 기성시가지의 공업 및 대학 등 신설 및 증대 제한에 관한 공업등제한법 폐지

-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환경친화 도시 육성 등을 위해 수도권 정책을 '규제'에서 '수도권 기능의 강화·재편'으로 전환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

- 2001년에 공장 등 제한 제도의 역할 및 실효성을 국토 심의회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한 뒤, 폐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2002년 폐지
- 산업구조의 변화(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services)으로의 시프트, 산업의 글로벌화(globalism) 등), 저출산 진행에 따른 인구감소, 환경에 관련된 제도 충실 이행 등을 근거로, 기성 시가지에서의 산업·인구 집중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효성·합리성이 희박해졌다는 점에 따라 제도 폐지

- 2002년 3월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업등제한법' 폐지하고 2006년 4월에는 '공업재배치촉진법'을 폐지

- 2007년 재정상 특별초치 역시 종료됨에 따라 정비계획에 근거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상 특별지원 제외

○ 일본은 「마찌즈쿠리 3법(まちづくり 3法)」(「도시계획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1998년부터 2000년에 걸쳐 제정·개정하는 등 공공이 마을만들기 형태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구체적으로 면적 정비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한 토지 유효이용 촉진 외에도 주변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상업 기능 활성화, 거주환경 정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 2003년 자치단체 광역화 추진을 위해 사회자본비중점계획법 제정, 49개 도도부현을 9~12개 도주로 개편, 3,323개 시정촌을 1,803개로 통폐합

○ 2006년 「중심시가지활성화법」(2006.8) 개정을 통해 내각총리대신(大臣)이 시정촌(市町村)¹⁾에서 작성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인정(이하, 인정기본계획)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지원조치를 확대

-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의 실현을 위해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한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를 설치

- 인정기본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특례, 보조금, 세제, 용자 등에 의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1) 우리나라 시·읍·면에 해당하는 일본의 행정 구역

< 일본 수도권 정비계획 변화 >

년도	정책내용
1983	• 허가조건 완화(허가기준 추가), 중소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신·증축 허가 추가
1988	• 「다극분산형 국토조성 촉진법」, 행정기관 지방이전 착수 및 수도권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
1998	• 규제업종 축소·완화 및 허가조건 완화
1999	• 규제대상지역 축소, 규제대상(대학원 제외) 및 기준면적 완화
2002.7	•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제한법」, 「긴키권 ²⁾ 기성시가지의 공장등제한법」 폐지
2003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제정, 자치단체 광역화 : 49개 도도부현을 9~12개 도주로 개편, 3,323개 시정촌을 1,803개로 통폐합하는 등 광역화
2006.4	• 「공업재배치 촉진법」 폐지
2006.8	• 「중심시가지활성화법」 개정 • 시정촌(市町村 : 우리나라 시·읍·면)이 작성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인정(인정기본계획) 제도 신설, 법률상의 특례, 보조금, 세제, 융자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

자료 : 이창호(2013),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및 추가 정리

○ 수도권 규제 폐지: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특구전략(2013) 추진

-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1999~2015년) : 수도권정책의 초점 '규제'에서 '수도권 기능 강화·재편'으로 전환
- 장기불황 해소, 글로벌 경쟁력 위해 수도권규제 폐지 등 전면적인 규제완화, 투자·경제 활성화 추진
- 규제개혁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국가전략특구법」(2013.12) 제정을 통해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고, 수도권에도 특구 지정(도쿄도, 가나가와현, 니가타시 등)

○ 2023년에는 수도권 금융특별제도, 소득세·법인세 특례조치 폐지

- 도부현에 대한 특별조치, 정비계획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일정 보조사업 부담액에 대해 수도권 지방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폐지
- 개인 또는 사업자가 기성시가지 등 내에 있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신 특정지역 내 자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 이익의 80%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

□ 수도권규제 완화와 함께 중심시가지 활성화, 도시재생 등 지역발전 정책 통해 지방 중소도시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

- 수도권 규제개혁과 규제 완화 특별대책으로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등 특구전략 추진: 경제회복과 청년실업문제 해결. 개혁 이후 생산, 일자리, 인구 증가

□ 규제는 완화하되 메리트는 유지, 비수도권 반발 무마 : 공업단지 조성사업

○ 공업단지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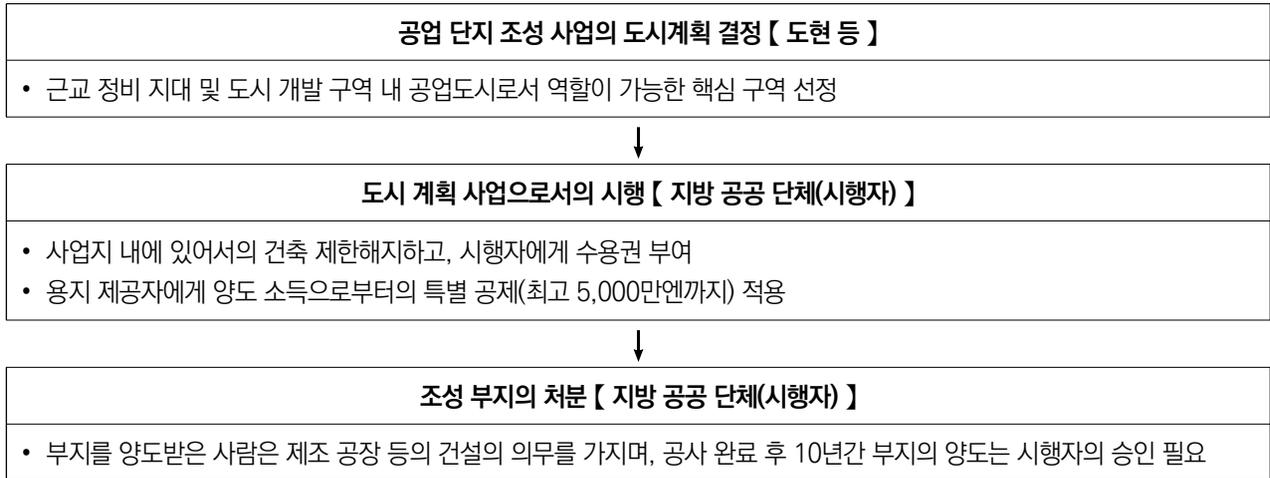
- 도시 개발 구역을 공업 도시로 발전시키고 근교 정비 지대 등을 공업 시가지로 정비하기 위해 지방의 제조 공장의 부지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

2) 긴키권 :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 효고현(兵庫県), 시가현(滋賀県), 나라현(奈良県), 와카야마현(和歌山県), 미에현(三重県)의 2부 5현

○ 최근에도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근교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착수와 사업화 검토

- 【근거법】 수도권외의 근교 정비 지대 및 도시 개발 구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긴키권의 근교 정비 구역 및 도시 개발 구역의 정비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 공업단지 조성 사업의 구조 >



□ 광역연계거점, 핵심시설 이전을 통한 분산 : 업무핵도시

- 도쿄 기성시가지 내 인구 및 행정, 경제 문화 등에 관한 기능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기능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도쿄권의 주요 핵심 시설 이전
 - 2008년까지 세제, 자금 확보, 지방채 특례 등에 의한 공공단체 핵심시설 정비 및 지원

< 일본 업무핵도시(광역연계거점) 주요 핵심시설 >

업무핵도시	주요 핵심 시설
지바	마쿠하리 멧세, 마쿠하리 테크노 가든
기사라즈	카즈사 DNA 연구소
사이타마 중추 도시권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쓰치우라 · 쓰쿠바 · 우시히사	츠쿠바 카피오
요코하마	파시피코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닛산 스타디움
하치오지 · 타치카와 · 타마	하치오지 학원 도시 센터, 파레 다치카와
가와사키	솔리드 스퀘어, 뮤자 가와사키
아츠기	아츠기 위성 비즈니스 파크
구마가야 · 후카야	테크노 그린 센터
나리타·치바 니코타탄	나리타 공항 여객 터미널 빌딩
마치다 · 사가미하라	사가미하라 산업 창조 센터
가스가베·고시야	동부 지역 진흥 교류 거점 시설
가와고에	가미야마 주조 자취지 활용 시설, 사이타마현 농업 학교
오메	요시카와 에이지 기념관

3 일본 수도권 규제완화 및 폐지 배경

□ 일본 제조품 출하액, 제조업체 및 종사자 수의 변화

- 공장등제한법 제정 당시에 비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었으며, 수도권 전체 제조업의 종사자수와 출하액이 감소함과 동시에 도쿄권역에서 교외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
 - 공장등제한법 폐지 이후에도 같은 추세
- 제조업 종업원 수도 1960년을 기점으로 3대 도시권 비율이 축소되고, 지방권의 비율 증가
 - 특히 3대 도시권 중 도쿄, 오사카의 비율 축소되고, 나고야 지방은 상대적으로 비율 상승

□ 일본 수도권 지역별 학생 수 변화

- 일본 학생 수는 1960년 71만명에서 2016년 기준 269만명으로 증가한 반면 기성시가지 비율 감소
 - 1960년 ~ 2002년 23구(기성시가지)의 비율 감소(44%→15%), 기타지역의 비율 상대적으로 증가
 - 2002년 제한법 폐지 이후 도쿄권 학생 수는 유사한 수준 유지

□ 일본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재검토를 위한 각계의 요구

- (오사카부) 대도시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및 예산에 관한 제한·요망(2003년 6월)
- (종합 규제개혁 회의) 신규 산업과 혁신관점에서 공장 등 제한 제도 재검토(2005년 7월)
- (도쿄도) “공장 등 제한 구역 내의 공장 및 대학 등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도쿄도 구부 등에 산업 및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공장등제한법” 은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다하였으며 새로운 도쿄의 산업 활력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폐지 주장(2005년 9월)
- (간사이 경제 연합회) 도심에서의 대학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등제한법을 완화함과 동시에, 자체 대학 입지 인정 필요성을 종합 규제 개혁 회의에 제출(2005년 9월)
- (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오사카시·교토시·고베시) 공장등제한법에 대해 폐지 요망서 제출(2005년 10월)
- (경제 단체 연합회) 신산업·신사업 창출 등의 관점에서 공장등제한법의 폐지를 포함한 추가 검토 필요성을 종합 규제 개혁 회의에 제출(2005년 10월)
- (경제 재정 자문회의) 대학 신·증설과 교육 개혁을 위한 공장등제한법 제도 재검토 요구(2007년 9월)

4 규제완화 대응 전략

□ 인프라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개발 프로젝트 확대

- 도시가 확장되면서 필요한 SOC 분야, 공항, 도시철도 등 도심지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보완
- 도쿄도의 공간을 확대하고 도심 내 인구가 추가 거주하면서 늘어나는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향으로 조성, 부지의 가치상승까지 공공의 역할, 이후 개발은 민간주도로 진행
 -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초기 정부자금 투입을 통한 신규 택지 및 지구 조성 후 다시 해당 부지의 가치를 끌어올려 판매하는 방식의 도시 개발 전략 추진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도시 개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시가지의 정비를 추진해야 할 지역(도시재생 긴급정비 지역) 및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중 도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특히 유효한 지역(특정 도시 재생긴급정비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
 - 예) 도쿄역 앞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라쿠초 지구 등
- 대표적으로 2023년 11월에 완공된 아자부다힐즈(AzabudahHills)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상복합 주택, 인터내셔널 스쿨, 문화시설, 호텔, 컨벤션 등 다양한 도시의 기능을 고도로 융복합한 빌딩으로 조성
-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One Park x One Town 프로젝트로 공원 및 녹지 공간 확보, 도쿄 그린비즈를 통해 근교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 진행 중

□ 일본 수도권 광역지방 계획 전략

- 수도권정비계획법 축소 이후 수도권 광역지방 계획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
- 거점형 국토계획으로 도심별 거점을 두고 각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원활한 거점 연결형 국토” 방향으로 추진
- 수도권의 역할은 ① 거대 재해 대응(지진, 쓰나미 등), ② 국제 경쟁력 강화, ③ 고령화 대응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점

5 종합 및 시사점

□ 일본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정책 변화

- 일본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30년 전 종료. 폐지를 통한 장점을 공감하고 현재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 발전 전략에 따라 효율적 도시 조성/배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 일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한 도시 인프라의 집중과 억제 목적은 낮아졌으며 연구소, 문화시설, 경기장 등 인프라를 분산해 중심지 이외 주변 도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
-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외에도 일본은 규제를 축소 혹은 폐지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며, 경제·산업분야 연합회 등에서 해당 규제의 불필요성 제시에 따라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재검토 요구 시 폐지 수순
 - 규제에 대한 필요성(인구감소, 토지단가 상승, 일자리 부족) 종료와 불필요한 규제 제도라는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폐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은 규제가 아닌 지원정책을 통해 수도권 활성화에 기여
 - 최근에는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점차 폐지(축소)하고 있으며 공업 단지 조성 사업 등 기성시가지 외부의 메리트 제공 유지로 공장3법 완화에 대한 불만 미제기
 -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교육법을 통해 필수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

< 일본 수도권정비계획법 정책변화 종합 >

구분	일본
규제 도입기 ▼ 규제 강화기 ▼ 규제 과도기 ▼ 규제 완화기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법」(1956년) 및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1959년) 제정
	1960~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한 규정 강화, 과밀 공업 지역에서 공업 집적도가 낮은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촉진
	1980년대 말 ~ 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
	1990년대 말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장)등제한법 폐지(2002년 7월) • '규제'에서 '수도권기능 강화 및 재편'으로 전환 • 기성시가지 외부 메리트 제공유지(공업단지조성사업 등) • 규제 아닌 지원을 통한 수도권 활성화

□ 한국 과밀억제권역 수정을 위한 전략 방안

- 수도권 정비 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고 계획 내 구역 재지정, 권역해제로 도시개발, 기업활동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상위법 수정 추진
 - 일본이 수정법의 가장 강한 규제인 공장3법을 폐지한 것처럼 과밀억제권역 종과세 폐지, 공장총량제 폐지 등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건의
 -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참여, 위원회에 건의, 국토부의 계획 수정 건의 추진, 수도권 규제의 불필요성 전달, 공감대 확대 추진
 - 관련 단체 각계의 공동의 목소리를 통한 규제 재검토 및 완화 건의 추진
 - 다양한 경제단체, 지자체, 위원회를 통한 정당성 건의
 - 일본 제도와와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규제가 아닌 지원 차원으로 제도 전환 요구
 - 규제는 완화하되 비수도권지역 지원 강화로 제도 전환
 - 이외 불필요성 제안을 위해 추가 데이터 확보(학생 수 변화 등) 등 개정 당위성 지속 제안
- ※ 본 간행물은 2024 전략연구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현안 연구」 중 일본사례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